
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병기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4238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6. 12. 8.

발 의 자 : 김병기 · 권철승 · 김중로
문미옥 · 서영교 · 송기현
신경민 · 신창현 · 양승조
윤호중 · 진선미 · 표창원
홍익표 · 김종대 의원
(14인)

제안이유

정부는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「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」을 발표하였음.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익명화, 총계처리 등 비식별 조치를 통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없게 된 정보는 현행법에 따른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보아 개인의 동의없이도 정보수집 및 제3자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 것임.

그러나 이러한 정보 역시 데이터분석 기술의 발전에 따라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특정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, 비식별정보의 무분별한 수집을 허용할 경우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남용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.

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전부 또는 일부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다른 정보와 결

합하여도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동의없이도 활용할 수 있도록 비식별조치와 관련된 내용을 일부 규정하고 있음.

따라서 현행법상 비식별조치와 관련된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고, 비식별조치를 통하여 생성된 비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안전성 확보 의무 및 위반 시 처벌 조항 등을 신설함으로써,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아닌 법률에 비식별조치를 규정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18조, 제22조의2 신설, 제71조, 제73조, 제75조).
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2항제4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, 제8호”를 “제2항제2호·제3호·제5호·제6호·제8호”로 한다.

제3장제1절에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2조의2(비식별정보의 이용·제공 등)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

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개인정보를 전부 또는 일부 삭제하거나 대체하여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도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(이하 “비식별조치”라 한다)할 수 있다.

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비식별조치로 생성한 정보(이하 “비식별정보”라 한다)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.

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비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생성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부득이하게 개인정보가 생성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수·파기하거나 추가적인 비식별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비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비식별정

보가 분실·도난·유출·위조·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⑤ 비식별조치의 방법 및 절차,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, 그 밖에 비식별정보의 이용·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71조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의2.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비식별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비식별정보를 제공받은 자

2의3. 제22조의2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비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생성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

제7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1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제22조의2제3항 단서를 위반하여 개인정보가 생성되는 경우에도 이를 회수·파기하지 아니하거나 추가적인 비식별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

1의2. 제22조의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비식별정보를 분실·도난·유출·위조·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

제75조제2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제4호의3 및 제4호의4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의2. 제2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

지 아니한 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,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.

⑤ (생략)

<신설>

⑤ (현행과 같음)

제22조의2(비식별정보의 이용·제공 등)

①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개인정보를 전부 또는 일부 삭제하거나 대체하여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도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(이하 “비식별조치”라 한다)할 수 있다.

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비식별조치로 생성한 정보(이하 “비식별정보”라 한다)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

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.

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비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생성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부득이하게 개인정보가 생성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수·파기하거나 추가적인 비식별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비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비식별정보가 분실·도난·유출·위조·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⑤ 비식별조치의 방법 및 절차,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, 그 밖에 비식별정보의 이용·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71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 2. (생략)

<신설>

제71조(벌칙) -----
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2의2.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

<신 설>

3. ~ 6. (생략)

제73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<신 설>

<신 설>

1. ~ 3. (생략)

여 비식별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비식별정보를 제공받은 자

2의3. 제22조의2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비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생성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

3. ~ 6. (현행과 같음)

제73조(벌칙) -----

-----.

1. 제22조의2제3항 단서를 위반하여 개인정보가 생성되는 경우에도 이를 회수·파기하지 아니하거나 추가적인 비식별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

1의2. 제22조의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비식별정보를 분실·도난·유출·위조·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

2. ~ 4. (현행 제1호부터 제3

제75조(과태료) ① (생략)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~ 4. (생략)

<신설>

4의2. · 4의3. (생략)

5. ~ 13. (생략)

③ · ④ (생략)

호까지와 같음)

제75조(과태료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4의2. 제2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

4의3. · 4의4. (현행 제4호의2 및 제4호의3과 같음)

5. ~ 13. (현행과 같음)

③ · ④ (현행과 같음)